

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

「감염병예방법」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에 따라 근로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*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.

*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(연차유급휴가)에 따른 유급휴가(연월차)는 제외

사업장명		사업주명	
근로자		근로자 생년월일	
유급휴가 기간(일수)	~ (일)	유급휴가 사유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

1. 사업주는 위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입원 또는 격리 등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,
2.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며, 근로자 본인 또는 가구원 중 1명도 동일한 사유로 생활지원비*를 지원받지 않았고 향후에도 지원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* 「감염병예방법」 제70조의4(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)

3. 만일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유급휴가 비용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 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.

2021. .

사업주 : (서명)

근로자 : (서명)